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2. 9. .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의안 번호	125
----------	-----

□ 제안이유

- 도의회의장의 의정활동보좌 및 의회공보기능 보강을 위한 인력(2명증원)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지기 01210-557 '92.7.24)됨에 따라
-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제4조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제4조 사무직원 정수조정
(현 재) (개정 후)
48명 → 50명

□ 의안내용

- 도의회사무처 인력증원 (2명)
 - 행정·별정6급 : 1명(공보전담)
 - 별정7급 : 1명(의장보조)

□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8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중 "48명"을 "5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개 정 안
<p>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사무</p> <p>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p> <p>는 <u>48명</u>으로 하며, 그 직급</p> <p>별 정원은 충청북도지방공</p> <p>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 - -</p> <p>-----</p> <p>- <u>50명</u> -----</p> <p>-----</p> <p>-----</p>